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2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3-2소위16-산02호
민원표시 2CA-2301-0882486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부지급 이의
신 청 인 A
피신청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의 결 일 2023. 4. 24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사업장에 대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의 배우자는 (주소생략) 소재 사업장(이하 ‘이 민원 이전 사업장’ 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들자 베이비시터 일을 병행하던 중 2021. 0. 0. 낙상으로 허리를 다쳤고,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신청인이 이 민원 이전 사업장 운영을 도맡아 했다. 신청인은 2021. 0. 0. B세무서의 ‘명의도용, 명의대여는 범죄행위, 실제 사업을 영위하

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 한다’는 취지의 배너 안내판을 보고 이 민원 이전 사업장 명의를 신청인으로 변경하고자 했으나, 법령상 명의변경에 해당되지 않아 이 민원 이전 사업장을 폐업하고 신청인 명의로 신규 사업자등록(이하 ‘이 민원 사업장’이라 한다)하였다. 2022. 6. 신청인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하 ‘이 민원 보전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을 기준으로 이 민원 보전금 지급 요건을 판단하여 2022. 7. 이 민원 보전금 부지급 통보를 하였다. 이 민원 사업장은 배우자로부터 명의이전이 되지 않아 폐업 후 재개업한 것이므로 이 민원 이전 사업장과의 동일성을 인정하여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 보전금은 공고상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를 기준으로 지원요건등 기준이 적용되는바, 이 민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상 개업일은 2021. 10.이고 이에 따른 이 민원 보전금 지급을 위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였을 때 매출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하고자 2022. 5. 3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53호)를 하였고, 이 민원 보전금 지급방법은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이 민원 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신속지급’과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확인지급’으로 나뉜다.

나. 이 민원 보전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

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원금액은 개별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을 지급하고,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1,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하며 이 민원 보전금의 지원금액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내용>

(단위 : 만 원)

구분		개별업체 매출액 규모					
		4억 원 이상		2~4억 원		2억 원 미만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개별업체 매출감소율	△60% ^{이상}	1,000	800	800	700	700	600
	△40% ^{이상} ~60% ^{미만}	800	700	800	700	700	600
	△40% ^{미만}	700	600	700	600	700	600

다. 이 민원 보전금의 지원대상은 개업일별 매출규모 요건을 충족하고 2021. 12. 15. 이전 개업하여 2021. 12. 31. 기준 영업 중이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고,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인프라 자료(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를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라. 이 민원 보전금 공고에 따르면 이 민원 사업장의 매출감소 판단 구간은 아래 <표2>와 같다. 이 민원 이전 사업장의 개업일은 2014. 0. 0.로 이 민원 이전 사업장과 이 민원 사업장의 동일성을 인정할 경우 매출감소 판단 구간은 <표3>과

같다.

〈표2. 이 민원 보전금 공고상 2021. 6.~2021. 10. 개업 사업장 매출감소 기준〉

개업일	매출액		비고
	기준기간	비교기간	
'21. 6월~ '21. 10월	'21.7~11월	'21.12월	·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표3. 이 민원 보전금 공고상 2019. 11. 이전 개업 사업장 매출감소 기준〉

개업일	매출액		비고
	기준기간	비교기간	
'19. 11월 이전	'19년	'20년	·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21년	
	'19.상반기	'20.상반기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1.상반기	
	'19.하반기	'20.하반기	
		'21.하반기	
	'20년	'21년	·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20.상반기	'21.상반기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0.하반기	'21.하반기	

* 매출감소 기준 중 한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다.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이전 사업장과 이 민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기재사항 및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4.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 기재사항〉

(표생략)

< 표5. 이 민원 이전 사업장 매출내역 >

(표생략)

< 표6. 이 민원 사업장 매출내역 >

(표생략)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① 피신청인은 단지 사업자번호가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이 민원 사업장이 이 민원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재난지원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인데 사유를 불문하고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하게 되어 사업자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두 사업장의 동일성 내지 연속성을 부정하는 것은 재난지원금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신청인이 폐업 후 개업을 하게 된 경위, 폐업 후 개업하기까지의 공백 기간, 소재지, 업종, 대표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인 점, ② 생계를 같이 하는 부부의 어느 일방에게 일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분업, 협업을 한다는 것이 일반적 관념인 바, 신청인은 재해 상해로 사업장 운영이 어려운 배우자를 대신해 이 민원 이전 사업장을 운영하고자 하였던 점, ③ 이에 관할 세무서에 대표자 변경 요청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아 국세청 매뉴얼에 따라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하고 신청인 명의로 신규 사업자 등록하게 되었던 것으로, 세법상 변경요건이 없어 재개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신청인의 개인적인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점, ④ 이 민원 이전 사업장과 이 민원 사업장은 소재지와 상호가 동일하고, 업종은 인쇄에서 상업인쇄로 변경되었을 뿐 그 변동이 크지 않으며, 이 민원 이전 사업장의 폐업과 이 민원 사업장 개업 사이의 공백기가 없는 점, ⑤ 이 민원 이전 사업장의 2020년 매출은 000,000,000원이고 이 민원 이전 사업장과 이 민원 사업장의 2021년 매출 합계는 000,000,000원으로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매출감소 기준에 따른 매출감소가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장에 대하여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보전금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사업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를 변경되는 경우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7.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9.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10.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11. 사이버몰[「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부가

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② ~ ⑤ 생략

[별지2]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53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목적

□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

2. 지원대상 및 내용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① 공통지원요건

- 국제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불입1, 불입2, 불입3)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①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②방역조치를 이행한 ③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

① (업종 매출감소율) 국제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 불입5)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 * '20. 8. 16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 ** 시설인원제한 조치의 경우 '21. 10. 1. 이후 조치부터 적용

【대상 시설 예시】

방역조치	대상 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 식당·카페, 노래(포인)연습장, 목욕장 - 설치예측시설 : 영화관·공연장, 카지노, PC방,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상점·마트·백화점, 일일사업체 - 직접판매업소 :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박물관, 독서실·스터디카페 - 독서실·스터디카페
시설 인원제한	- 식당·카페 : 영화관·공연장, PC방, 결혼·결혼·결혼마당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불나)스포츠경기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도서관, 직영판매점포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박물관, 독서실·스터디카페 - 이·미용시설 : 결혼식장, 강제식당, 동양전통문물 (설치)스포츠경기장 : 설치제독시설, 키즈카페, 숙박시설 - 전시회장·박람회장 : 국제회의장·박람회사

*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시설구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③ (중기업) 개업 시기별 매출규모가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불입3)

□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 시 기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불입5)
- (매출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비교 기준 적용 (→ 불입4)
 - * 국제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감소를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
 - * 예) 매출감소 기준별 매출감소율을 모두 계산하여 가장 큰 매출감소율을 적용

기준기간	비교기간	매출감소율	적용
'19년	'20년	70%	○
'19년	'21년	45%	

②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단위 : 만원)

구분	연매출액* 4억원 이상		연매출액* 2~4억원		연매출액* 2억원 미만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개별 매출 감소율	△60% 미만	1,000	800	800	700	600
	△40% 미만~60% 미만	800	700	800	700	600
	△40% 미만	700	600	700	600	600

* 기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 불입3)

2. 다수사업체·공동대표 지원방식

- (다수사업체)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

【다수사업체 지원 방식】

* 지원금액이 높은 상위 4개 금액을 순서대로 a, b, c, d라 할 때, 지원금 = a + 0.5b + 0.3c + 0.2d

[예시1] (사업체 2개) 지원금액이 1,000만원, 600만원
⇒ 지원금 = (1,000 × 100%) + (600 × 50%) = 1,300만원

[예시2] (사업체 3개) 지원금액이 800만원, 700만원, 600만원
⇒ 지원금 = (800 × 100%) + (700 × 50%) + (600 × 30%) = 1,330만원

[예시3] (사업체 4개) 지원금액이 1,000만원, 800만원, 700만원, 600만원
⇒ 지원금 = (1,000 × 100%) + (800 × 50%) + (700 × 30%) + (600 × 20%) = 1,730만원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3. 지원제외

- 사형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 제외 업종 (→ 불입6)
- *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 '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비영업용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은 지급 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3. 지원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시 기	대 상	지급 시기
신속 지급	- 기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5.30.(월)~
확인 지급	- 개별 증빙자료 확인(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 지원금액 변경(매출액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6.13.(월)~
이의 신청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받은 경우	8월 중

1) 신속지급

- 대상 : 기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2. 5. 30.(월) ~ '22. 7. 29.(금)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문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6.13.부터 지급 개시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온라인 신청 절차】

대상 여부 조회	본인인증	추가정보 확인·입력	지급
- 정보제공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휴대폰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인증 - 본인은 본인공통(주민) 인증서만 가능	- 업종명 - 사업장 주소 - 계좌번호	-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 알림 - 현금 입금

2) 확인지급 *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설립인증서) 등
- 신청기간 : '22. 6. 13.(월) ~ '22. 7. 29.(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3) 이의신청 *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 8월 중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4.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당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가능

5.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 (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누리집(www.sosangonginsonsilbojeon.kr)

붙임 1 소기업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열위 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준	매출액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소재처리 및 포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프레스, 연박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7. 의약품 분할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랙터 등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80억원 이하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23. 인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연료 및 기화제품 제조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50억원 이하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숙박 및 음식점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繕)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붙임 2 중기업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에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소기업들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보비제를 제조업	C14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전자제품 제조업	C24	
5. 전기전자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8. 광업	B	
9. 석유제품 제조업	C10	
10. 납땜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1,000억원 이하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13. 코르크, 목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제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기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도구 제조업은 제외)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8	
19. 자동차 및 트럭의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급장치 공급업	D	800억원 이하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식료 제조업	C11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약품, 화장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류, 섬유,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600억원 이하
32. 운수 및 정보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	N(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숙박(旅館)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00억원 이하
41. 관광 및 여행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붙임 4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

개업일	매출액		비고
	기준기간	비교기간	
'19. 11월 이전	'19년	'20년	·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21년	
	'19. 상반기	'20. 상반기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21. 상반기	
	'19. 하반기	'20. 하반기	· (간이연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채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 비교
		'21. 하반기	
	'20년	'21년	·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21. 상반기	
	'20. 상반기	'21. 상반기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21. 하반기	
	'20. 하반기	'21. 하반기	· (간이연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채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 비교
		'21. 상반기	
'19. 12월~'20. 11월	'20년	'21년	·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21. 상반기	
	'20. 상반기	'21. 상반기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21. 하반기	
'20. 12월~'21. 5월	'21. 상반기	'21. 하반기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21. 상반기	
	'21. 7~11월	'21. 12월	·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 비교
		'21. 12월	
'21. 11월~'21. 12월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을 적용하되,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사업체가 속한 업종은 해당 사업체의 주업종 기준으로 한다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 연도별 또는 반기별(일반과제자) 매출 비교시 신고매출액을 연환산하여 비교
- 신고매출액 환산 시 개업 직월부터 신청한 개월 수 적용(예 : '19. 3월 개업 → '19년 신고매출액 × $\frac{12}{9}$)
- 간이과세자(연세사업자)의 반기별 매출 비교, '21. 6월 이후 합업자의 '21. 7~11월 대비 '21. 12월 매출 비교시 해당기간 과세인프라 합산액을 적용
-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 신용카드 결제금액,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감소 기준 중 한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 비교기간이 되는 '20~'21년의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자료 모두 부채시 확인지급 등을 통한 영입 여부 확인 후 지급(영입여부 확인을 위한 기준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붙임 3 지원대상 판단기준

□ 매출규모 판단기준

○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지원요건 매출규모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으로 판단

개업시기	매출규모 판단기준	비고
'18년 이전	'19년 신고매출액,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신고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반영하며 '19년,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모두 부채시 (0원 포함) 지원 제외
'19년	'19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① ,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20년	'20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② ,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11월	'21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③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2월 및 '22년 1월 과세인프라 ^④ 모두 부채시 지원 제외
'21년 12월	소기업 규모로 추정	

- ① 신고매출액 연 환산 시 개업 직월부터 신청한 개월 수 적용(예 : '19. 3월 개업 → '19년 신고매출액 × $\frac{12}{9}$)
 ②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 신용카드 결제금액,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상향지원 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판단 기준

· 아래 조건(①, ②)을 모두 만족할 경우 상향지원

①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모두에 대해 소기업임을 초과

②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고, 방역조치를 이행

개업시기	매출규모 판단기준	비고
'18년 이전	'19년 신고매출액,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신고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반영하며 '19년,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모두 부채시 (0원 포함) 지원 제외
'19년	'19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① ,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20년	'20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② ,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10월	'21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③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2월 및 '22년 1월 과세인프라 ^④ 모두 부채시 지원 제외
'21년 11월	소기업 규모로 추정	

- ① 신고매출액 연 환산 시 개업 직월부터 신청한 개월 수 적용(예 : '19. 3월 개업 → '19년 신고매출액 × $\frac{12}{9}$)
 ②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 신용카드 결제금액,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단,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기업(평균매출액 등 50억원 이하)에 해당하고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상향지원(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제출 필요)

붙임 5 상향지원 업종(업종별 매출 40%이상 감소) 현황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세세분류 기준

대분류	세세분류	대분류	세세분류
제조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도매 및 소매업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무도장 운영업		그 외 기타 무도장 소매업
	노래 연습장 운영업		연세점
	수영장 운영업		여행사업
	전차 게임장 운영업		서적 임대업
	자전거점 운영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불행점 운영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점점점 게임방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기타 오락장 운영업		보육시설 운영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 유류 주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일반 유류 주점업
	공연시설 운영업		기타 주점업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		생략주 전문점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휴양 콘도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운수 및 창고업	공방 운영업
	기원 운영업		항안 내 여객 운송업
	연극단체		항공 여객 운송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표면처리 및 척측 작업 제조업
	사격장 관리 운영업	제조업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공연 기획업		방한 캠프용 안전기 제조업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정보통신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영화관 운영업		육성업
	고유 서비스업		마사지업
	철수선 수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붙임 6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임대 중개업
46107 중	예술물, 공예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임대매 도매업
46333	임대매 도매업 * 임대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유류제품 도매업 * 단, 연소유류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음주판매업
56212	무주류음주판매업
58122 중	경매, 경품, 경품 관련 장치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미탈 중개업
64	관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주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 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9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률,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률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알링 및 조사 서비스업 (예: 달링업, 호신수 등)

표준산업분류	업종
75993	신용조사 및 주실대형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인대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볼라텍 등)
9612 중	중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나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청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청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텔, 대화텔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추벤처기업보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 및 예시

* 도스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피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3년 4월 24일